

보도시점 : 2025. 4. 27.(일) 11:00 이후(4. 28.(월) 조간) / 배포 : 2025. 4. 25.(금)

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... 4월 28일부터 시행

- 정기검사 강화, 사용·튜닝·임시검사 신설... 운행 안전성 제고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(이하 튜닝),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,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「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(국토교통부-환경부 공동부령) 제정안과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·시행한다.
 -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,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'23.9)되었고,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.
- 그리고,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(4.28~7.27) 계도기간을 운영한다.
 -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특과 홍보전단,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(<https://main.kotsa.or.kr>)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 - 또한,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(유효기간 경과)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,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.
-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정기검사 강화

- 정기검사는 환경분야 검사 뿐만 아니라, 원동기, 주행장치,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, 원동기·주행장치·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.

* (기존) 대기환경보전법령 등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검사

- 검사대상은 **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*** 이륜자동차와 **대형 전기이륜자동차**이다.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(전국 59개소)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(전국 476개소)에서 받을 수 있다.

* 대형 이륜자동차, '18년 이후 제작된 중·소형 이륜자동차

※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(<https://main.kotsa.or.kr>)와 사이버검사소(www.cyberts.kr)에서 공단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 확인 가능

-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**우편과 알림톡**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**안내**를 받게 되며, **2년**(새차는 3년 이후부터) **마다** 정기검사 **유효기간 만료일 전·후 31일**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*.

* (과태료)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, 31~84일 2만원+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, 85일 이상 20만원

② 사용검사 신설

-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**다시 사용하려는** 경우에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**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** 받아야만 한다.

* (**기준**)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만 하면 검사절차 없이 다시 사용 가능

- 검사대상은 **대형 이륜자동차**(전기차량은 '25.4.28. 이후 등록된 대형차량에 적용)이다. 다만,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**중·소형 이륜자동차의**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**62일**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③ 튜닝검사 신설

-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하여 **튜닝승인을 받은** 경우에 튜닝승인 후 **45일**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**튜닝검사를** 받아야만 한다.

* (**기준**)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

- 다만, 기준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**원상복구 등 조치를** 할 수 있도록 **'28년 4월 27일까지(3년간)** 유예기간을 두었다.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**부적합 판정**이 될 수 있다.

④ 임시검사 신설

- 이륜자동차의 점검·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·정비를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.
-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, 안전운행 지장,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·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
⑤ 검사원 교육 신설

- 이륜자동차 검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준을 마련하였고, 검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
 - 또한, 전문교육기관 지정·해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검사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.
-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정보험과장은 “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”된다면서, “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하여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정보험과	책임자	과 장	배소명 (044-201-3855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훈 (044-201-3858)



참고1

이륜자동차 유형 및 안전검사의 구분

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유형 구분

이륜차 정의		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~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(법 제3조제5호)			
구분	내연	경 형	소 형	중 형	대 형
	전기	50cc미만	50cc이상~100cc이하	100cc초과~260cc이하	260cc초과
		4kw이하	4kw초과~11kw이하	11kw초과~15kw이하	15kw초과
2륜					
3·4륜					

□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구분

검사종류	검사대상(주기·유효기간·검사기간)
사용검사	○ 사용폐지신고 후 다시 사용신고하려는 대형 이륜차
정기검사	○ (대상)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, '25.3.15.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차 ○ (주기) 최초 사용신고 후 3년, 이후 2년마다 실시 ○ (유효기간) 사용신고일, 정기검사받은 다음날, 정기검사기간 중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○ (검사기간)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·후 31일까지
튜닝검사	○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차
임시검사	○ 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이륜차

도로 위 안전

이제 이륜차검사로 시작하세요!

‘이륜자동차 검사’
2025년 4월 28일부터 이렇게 확대·시행 됩니다.

- 정기 검사**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- 사용 검사**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
- 튜닝 검사** 소유자의 취향과 목적에 맞게 사전승인 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
- 임시 검사** 불법튜닝, 단속명령 등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
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

정기검사 신청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
도로 위 안전



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검사로 시작하세요!

정기 검사

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(신차는 3년 이후 2년마다)

- 대형 이륜자동차 및 2018.1.1. 이후 제작, 신고된 중·소형 이륜자동차
- 2025.4.28. 이후 제작,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
- 검사유효기간 전·후 31일 이내 검사

사용 검사

사용폐지신고 후 재사용신고 전에 실시하는 검사

- 사용폐지신고 이후 재사용신고를 하려는 대형 이륜자동차 (단, 전기 이륜자동차는 2025.4.28. 이후 제작, 신고된 대형 이륜자동차에 한함)

튜닝 검사

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검사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(제52조 준용)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

임시 검사

검사명령·정비명령·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

-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단속, 적발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
- 소유자 요청에 의해 검사를 수검하려는 이륜자동차



국토교통부

TS 한국교통안전공단

⚠ 정기검사 신청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,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